

구미시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06. 10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「구미시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조례」 제5조의 수상후보자 추천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대상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,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 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시장의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수상후보자 추천을 의뢰토록 되어 있는 것을 명문화로 개정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- 경상북도 기획관실-2040(2006.04.03)호의 「2006년도 지방규제개혁 추진계획」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조례”를 “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 조례”로 한다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수상후보자 추천)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당해 읍·면·동장이 하 되, 제3조 제1호 내지 제8호의 각 부문별 관련기관·단체장에게 수상후 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개정 이유
제명 <u>구미시자랑스런구미 사람대상조례</u> 제5조(수상후보자 추천)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당해 읍·면·동장이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 기관단체의 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.	제명 <u>구미시 자랑스런 구미 사람 대상 조례</u> 제5조(수상후보자 추천)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당해 읍·면·동장이 하되, 제3조 제1호 내지 제8호의 각 부문별 관련기관·단체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.	제명 띄어쓰기 적용 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